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1호중 “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와” 를 “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와” 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2호중 “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에” 를 “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에” 로 “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” 를 “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기준)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” 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중 “회계과” 를 “총무과” 로 한다.

제30조중 “회계과장” 을 “총무과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동일 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와 정부 각부처, 타 특별시·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</u> 2. <u>동일 직할시·도(시·군 포함)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제28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① (생략) ② 물품의 매입, 수리, 수선,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)이 행하고 <u>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.</u> (이하생략)</p> <p>제30조(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)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<u>회계과장을</u>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</p> <p>1. <u>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와</u>.....</p> <p>2. <u>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에</u>..... <u>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</u></p> <p>제28조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</p> <p>... <u>총무과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.</p> <p>제30조(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) </p> <p>... <u>총무과장</u></p>